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10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00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손명수의원 대표발의(제2204200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건축사 자격 결격사유에 벌금형 집행유예자를 제외하도록 명시 (안 제9조제2호 및 제3호)	2

I. 손명수의원 대표발의(제2204200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손명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9. 23.

다. 회 부 일 : 2024. 9.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과거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 1. 7. 시행)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호 및 제3호).

3. 검토의견

가. 건축사 자격 결격사유에 벌금형 집행유예자를 제외하도록 명시
(안 제9조제2호 및 제3호)

현 행	개 정 안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9조(결격사유)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 ----- ----- <u>끝나거나</u> <u>(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u> <u>다)</u>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u>형의</u>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 <u>금고</u> <u>이상의 형의</u>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모든 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만 건축사 자격 결격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

과거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2016년도에 「형법」이 개정(2018. 1. 7. 시행)¹⁾ 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음.

이로 인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건축사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²⁾.

이에 개정안은 「건축사법」 제9조제3호의 건축사 자격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한편, 현행법 제9조제2호에서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건축사 자격의 결

1)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가 개정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됨.
(당초) 3년 이하 징역, 금고 → (개정) 3년 이하 징역,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건축사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결격사유 관련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유사 입법례³⁾를 살펴볼 때,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경우”⁴⁾ 또한 자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에 따라 상기 형의 집행 종료 간주 규정을 현행법 제9조제2호 건축사 자격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것 역시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85

3) 「변리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인회계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1. ~ 2. (생략)
3. 이 법 또는 「건축법」, 「건축사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